#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64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김선교·서천호·박덕흠

김상훈 • 김위상 • 김석기

윤상현 • 구자근 • 최보윤

김예지 · 김성원 의원

(11인)

## 제안이유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주요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지속 반복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 수급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보다는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적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며, 자조금단체 등 생산자 조직도 육성 초기 단계로 자율적인 수급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 관리방안을 구축하여 추진하고자 함.

생산자 조직화를 전제로 민·관이 협력하는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사전 재배면적 관리, 생육점검 강화, 거래량·가격 등을 사전 약정하는 계약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급안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의 경영위험을 차단

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여 생산자와 국민의 편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운영할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 나. 주산지별 생산면적 설정, 생산 및 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 수립 등 주산지협의체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앙협의회를 통해 해당 계획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추진방안 등을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 다. 실효적인 농림업관측 추진을 위해 분석의 범위 내 소비실태, 수요 량 변화 등 소비 측면 분석 부분을 명확화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생산자단체 등이 농산물 수요자와 일정기간 물량과 가격조건 등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사전 재배면적 관리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신설).
- 바. 시·도지사는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수급관 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사.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급안정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상기 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경우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 법률 제 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생산자 대표로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협의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주산지협의체의 기능 등)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급 관리 계획(이하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1.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설정
- 2. 주산지별 생산 및 출하 시기 조정
- 3. 병해충 방제, 토양 및 물관리 등 주산지 품목 생육 및 작황 관리
- 4. 그 밖에 수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제1항의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 ③ 중앙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수급관리계획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추진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수급관리계획의 수립, 이행 절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를 "소비실태, 수요량 변화, 해외시장 정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계약생산)"을 "(계약생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을 "따른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 제2항에 따른 계약거래를 체결 및 이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농산물 수요자 간 일정기간 물량과 가격조건 등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제3호 중 "제9조"를 "제9조의3"으로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제9조의3 및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수급안정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사전 재배면적 관리
- 2. 병해충 방제 등 생육 관리
- 3. 출하 시기 조정 등 출하조절
- 4.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및 계약거래 장려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체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급관리계획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제1항의 수급안정사업을 통하 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의2(수급관리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수급안 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의3(종전의 제9조)의 제목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수급 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채소류"를 "제9조에 따른 수급안정사업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에 대응하여 채소류"로,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를 "농산물의 수매 등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9조"를 "제9조의3"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중 "제9조의2제3항"을 "제9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중 "제9조, 제9조의2"를 "제9조, 제9조의4"로 한다. 제59조제1호 중 "제9조"를 "제9조의3"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 산지의 시 · 도지사는 주산지의 지 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 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 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이하 "협 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생산자 대 표로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 금단체의 협의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3(주산지협의체의 기능 등)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급 관리 계획(이하 "수 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설정 2. 주산지별 생산 및 출하 시기 조정 3. 병해충 방제, 토양 및 물관리 등 주산지 품목 생육 및 작황 관리 4. 그 밖에 수급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 저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 략)

제6조<u>(계약생산)</u> ① 농림축산식품부 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 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2에 따른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
한 품목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제1항의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라 수립된 수급관리계획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
고 추진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급관리계획의 수립,
이행 절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세5조(농림업관측) ①
소비실태,
수요량 변화, 해외시장 정보
② ~ ⑤ (현행과 같음)
네6조 <u>(계약생산 등)</u> 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
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
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
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
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가격 예시) ① ~ ③ (생 략) 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농산물 수요자
간 일정기간 물량과 가격조건 등
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
<u>다.</u>
<u>③</u>
따른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 제2
항에 따른 계약거래를 체결 및 이
<u></u> <u> </u>
]8조(가격 예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 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u>제9조</u>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4. ~ 5. (생략)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3. <u>제9조의3</u>
4. ~ 5. (현행과 같음)
제9조(수급안정사업)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
<u>다.</u>
1. 사전 재배면적 관리
2. 병해충 방제 등 생육 관리
3. 출하 시기 조정 등 출하조절
4.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
약출하 및 계약거래 장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체

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급관리계획을 추진하고자 할 경

우 제1항의 수급안정사업을 통하

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신 설>

제9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
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
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
정기금으로 해당 <u>농산물을 수매할</u>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
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 ② · 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생산・출 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생략)

저	∥9조의2(수급관리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수급
	안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
	<u>할 수 있다.</u>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3 (수급 불안 시의 생산자 보
<u>호</u> ) ① <u>제</u> 9
조에 따른 수급안정사업에도 불구
하고 이상기후 등에 대응하여 채
<u>소류</u>
<u>농산물의</u>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u> 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u>④</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조의2 (몰	수농산물	등의	이관)	1
~ 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 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생략)

제14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매와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수출·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포장·방제(防除) 등 사업 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5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 2. (생략)
- 3. <u>제9조의2제3항</u>, 제16조제2항 및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 4. (생략)

제9조의4 (몰수농산물 등의 이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b>4</b>
제9조의3제3항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제9조의3
<u>.</u>
제55조(기금의 조성) ①
1. ~ 2. (현행과 같음)
3. 제9조의4제3항
4. (현행과 같음)
4. (건정나 任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	2
하여 지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9조, 제9조의2</u> , 제13조 및	2. <u>제9조, 제9조의4</u>
「종자산업법」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농림축산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기면	
이를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	
하여야 한다.	
1. <u>제9조</u> , 제13조 및 「종자산업	1. <u>제9조의3</u>
법」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	
한 결과 생긴 결손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